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0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한준호 · 김주영
정춘생 · 진선미 · 김기표
서미화 · 민병덕 · 김남국
여기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,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,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

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“학습부진아 등”을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4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4제4항제3호 중 “학교, 학습부진아 등”을 “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7. (생략)

18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19. ~ 28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

-----.

1. ~ 17. (현행과 같음)

18. -----

-----학업에
어려움을 겪는 학생-----

19. ~ 2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-----

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·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
일부개정법률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·확인) ① ~ ③ (생략)

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

-----.

⑧ -----제7항-----

-----.

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
일부개정법률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·확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하지 아니하다.	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<u>학</u> <u>교</u> , <u>학습부진아</u> 등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는 기관	3. ----- -- <u>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</u> <u>겪는 학생</u> ----- -----
4. · 5. (생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